

의안번호	제 767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361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8년 1월 9일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7
----------	-----

제출연월일 : 2018. 1.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개정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수: 3,135명 → 3,175명, +40명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개정안 제4조, 별표3)

1) 일반직공무원: 2,883명 → 2,903명, +20명(5급 이하)

2) 교육전문직원: 236명 → 256명, +20명(5급상당 이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첨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해당 없음(2017. 12. 8. ~ 2017. 12. 28.)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3,135명”을 “3,1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2,892명”을 “2,912명”으로 하며, 제3호 “236명”을 “2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7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03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6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56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2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135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892명</u>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p> <p>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236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175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2,912명</u> -----</p> <p>3. ----- ----- : <u>256명</u></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3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83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4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7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03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6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56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2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관계법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6.14.] [대통령령 제28013호, 2017. 5. 8.,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증원분 및 교육행정수요 반영
-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5424(2017.10.20.)

##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40명(일반 지방공무원 20명, 교육전문직원 20명) 인건비

##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 ④ 생략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3,634,160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b>14,712,087</b>
가. 일반지방공무원 69,261,000원×20명=	1,385,220	1,154,350	1,433,703	1,483,883	1,535,819	<b>5,607,755</b>
나. 교육전문직원 112,447,000원×20명=	2,248,940	1,874,117	2,327,653	2,409,121	2,493,441	<b>9,104,332</b>

※ 2018년은 10개월분만 추계하고, 2018년 이후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인상을 적용

다. 채용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입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보통교부금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세출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정규직인건비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재원조달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의존 재원	소계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028,467	3,761,356	3,893,004	4,029,260	14,712,087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금						0
기타(차입금,민자,예비비등)						0